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근거 신설〉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3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근거 신설	2
--	---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현황	8
2.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지원 현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기헌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7.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 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근거 신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u>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u>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 ----- ----- ----- <u>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u>대출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u>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 상환----- -----.
--	--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¹⁾할 수 있는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관련 고시와 내규에도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 상환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상환회차별 상환액을 감소시키고, 상환유예는 대출원금 거치기간을 늘림으로써 원금 상환시기를 늦추게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2조(상환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융자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1.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규)

제78조(상환기간 연장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유예와 별도로 ‘장기분할상환’을 도입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환기간 연

장이나 상환유예보다 좀 더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은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연장 가능한 상환기간이 최대 5년²⁾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관련 고시 및 내규에서는 폐업 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일시상환 의무와 일시상환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6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법원에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소진공에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일 전 채권회수절차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규)

제100조(기한의 이익 상실 관리)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2)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음.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즉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당해 채무에 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1. 일시상환대출인 경우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60일에 이른 때
2.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횟수가 3회 이상 이른 때
3. ~ 7. (생략)
8. 폐업, 조업중단, 대표자 도피 등의 사유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단, 폐업 후 제1호와 제2호의 사유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소상공인이 일시 상환의 부담 없이 적시에 폐업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상환유예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폐업 시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점까지 법률에 규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신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상환기간 연장과 별개로 ‘장기분할상환’을 규정할 실익은 없다는 입장임.

또한, 폐업 시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환유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문구는 만기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 소상공인정책자금('24년 37,100억원)

구 분	예산(억원)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소 계	37,100	-	-	-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11,100	-	-	-
- 일반자금	11,100	업력 무관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0.6%p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18,000	-	-	-
-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4,000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금리 +1.6%p
- 재도전특별자금	2,500	재도전,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1.6%p
- 긴급경영안정자금	4,500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1억원	고정 2.0%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	장애인기업	1억원	고정 2.0%
- 대환대출	5,000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의 7%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원	고정 4.5%
③ 성장기반자금	8,000	-	-	-
- 소공인특화자금	5,000	업력 무관 소공인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기준금리 +0.6%p
- 혁신성장촉진자금	2,600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기술도입 소상공인	(혁신형) 시설 10억원 운전 2억원 (일반형)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기준금리 +0.4%p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400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5억원	기준금리 +0.4%p

* '24년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51%

□ 추진배경

- 소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보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완화와 재기 지원('15~)

□ 지원대상 및 근거

- (지원대상)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한 폐업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정상 상환 중인 자
- (지원근거) 소진공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내규)」

□ 지원실적

- 폐업한 소상공인 보유대출 155,870건(8,779억원)*에 대하여 대출만기 까지 일시상환 유예 지원 중('24년 5월말 직접대출 잔액기준)

*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등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65,570건(7,673억원) 제외

□ 타기관 사례

- (신보)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여신유지 방안('23.2.15~9.30)’을 현재까지 운용기한 연장하여 지원(신보 신용보증부실관리요령에 근거)
- (중진공) 대출기업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 등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대출만기까지 대출 유지(중진공 대출기본약관에 근거)
- (지역신보) 폐업 시에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증사고 처리유보(신보중앙회 보증사고관리요령에 근거)
 -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잔액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하여 상환부담 완화 지원 중(중기부 고시(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지원 대상)에 근거)

* 브릿지보증: (현재) 12개 지역신보 → ('24.하) 전체 17개 지역신보로 확대 예정